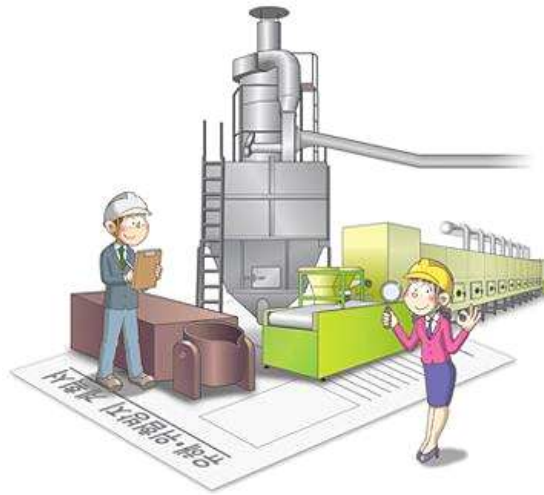


안전 20-02



제1장: 정리정돈과 재해예방, 제2장: 위험성 평가, 제3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KTS 한국기술안전(주)

K T S K O R E A T E C H N O L O G Y S A F E T Y C O . , L T D .

산업안전·보건 소식지

1. '中 `신종코로나` 확산 가속, 사망 81명·확진 2806명'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환자와 사망자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다. 26일에는 환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새 사망자가 20명 이상, 확진자는 800명 이상 증가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27일 낮 12시 현재까지 전국 30개 성에서 2천806명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8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보다 확진자가 833명, 사망자는 25명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우한 폐렴의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조만간 중국 전역 확진자 수는 3천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며, 사망자 발생 지역도 우한 등 후베이(湖北) 지역을 넘어 중국 각지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해외로 떠난 우한 탑승객은 태국이 2만5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1만680명, 도쿄 9천80명, 한국 6천430명 순으로 조사됐으며 우한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간 인원은 중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10만명에 달한다. [한국경제TV 입력 : 입력 2020-01-27 16:38]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네번째 확진환자가 발생으며 1월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환자는 4명이다. 확진환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57명으로 1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56명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격리에서 해제됐다.

■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시 옷소매로 가리기, 마스크 착용, 발열 등 감염 의심시 1339로 전화

2. '가스배관 막음장치 없어... 폭발 원인 가능성 [동해 펜션 사고 일가족 6명 사망]'

설날인 지난 1월 25일 강원 동해시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나 일가족 6명이 숨지고 횡집 손님 등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는 펜션이 불법 숙박업소인 데다 소방당국 등의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총체적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난 펜션 객실 8곳 중 6곳은 인덕션으로 교체됐고, 나머지 2곳은 가스레인지 시설이 남아 있는 것을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기존 가스레인지 시설을 철거하고 인덕션을 새롭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객실 내 가스 배관 중간밸브 부분의 막음 장치를 부실하게 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가스레인지 철거 시 액화석유(LP)가스 중간공급자가 배관 마감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해당 작업자를 상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LP가스 밸브를 완벽히 봉인해 가스누출을 없게 해야 하지만 막음 장치가 제대로 안 돼 LP가스가 누출됐고, 어느 순간 휴대용 가스버너로 추정되는 발화원의 점화로 연쇄 폭발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세계일보=박연직 선임기자]

3. '韓, 사망자수 줄었지만 여전히 '산재 후진국' ... 獨·日의 3배'

1월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보다 116명(11.9%) 줄어 역대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도 0.45~0.46명 정도로 추정돼 사상 처음으로 0.5명 이하로 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고 사망 만인율은 독일 0.13명(2018년 기준), 일본 0.15명(2018년 기준)에 견주어 3배 이상 높다. 이탈리아(0.24명, 미국(0.37명), 아르헨티나(0.44명)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는 얘기다.

현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산재 사고사망자를 500명대로 낮춰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고용부는 작년과 같은 감소폭이 이어진다면 2022년에는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600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8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839명으로 감소폭이 132명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2018년 7월부터 공사 규모 2000만원 미만 건설현장도 산재보상 범위에 포함돼 사고사망자에 16명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리·감독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주도로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매일 '파트롤' (순찰) 점검반의 감독 활동을 벌인 게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작년 7월부터 일부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파트롤을 밀어붙였다. 고용부는 건설 현장에서 주로 해온 파트롤을 올해는 제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조업의 파트롤은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위험 기계를 가동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제1장 정리정돈과 재해예방

1. 정리정돈의 이해

가. 정리정돈의 의의

안전은 정리·정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고 말할 정도로 정리·정돈과 사고 예방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리·정돈이라 하면 단지 흩어져 있는 물건을 한 장소에 치워두고 청소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안전상의 개념으로 보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 (1) 정리란 필요한 물품과 필요없는 물품을 구분하여 필요한 것을 정비해 두고 필요 없는 물품은 작업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두는 것을 말한다.

- 작업을 하다보면 잔재나 불량품 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쌓이게 되며 필요없는 물품은 현장의 공간을 좁게 하고 생산에도 방해가 되며 작업능률을 악화시킨다.
- 사용하는 물건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구분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은 즉시 폐기 처분한다.



- (2) 정돈이란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배치해 놓은 것을 말한다.

- 필요한 것은 정돈하여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장소에서 안전한 상태로 깨끗하게 수납하여 보관한다.
- 무엇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용이하게 식별표시를 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별로 보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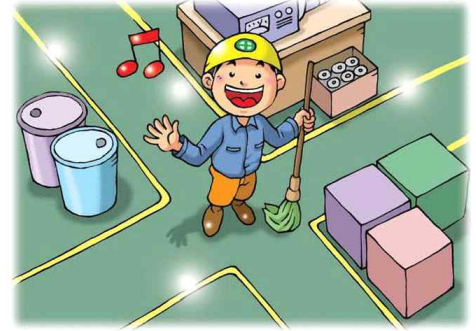
나. 정리정돈의 효과

(1) 낭비를 줄임으로서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된다.

- 재고가 장기간 쌓여있는 낭비가 제거 된다.
- 재고 보관에 필요한 장소(선반, 캐비닛 등 설치 장소)의 낭비가 제거 된다.
- 운반구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 발생하는 낭비가 제거 된다.
- 찾거나 피해가거나 돌아가는 등의 불필요한 행위, 준비하거나 운반하는 등의 부가가치가 없는 행위로 인한 낭비가 제거 된다.

(2) 안전이 향상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청소가 잘 되어 위험개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자재 정리를 잘하면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통로도 정비된다.
- 자재 적치에 있어 최소량만 확보함으로 붕괴로 인한 위험, 돌출로 인한 위험, 다량 취급으로 인한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
- 화재 등 불의의 사고 시 정돈된 소화설비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피가 용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3) 기계·설비유지·관리가 쉬워진다.

- 청소를 잘하면 먼지나 모래 등 기계 설비에 결함을 초래하는 요소를 제거하게 되어 설비의 수명이 연장되고 성능이 유지된다.
- 청소가 잘되면 주유 관리가 용이하고 이상부위 발견이 용이해진다.

(4) 품질이 좋아진다.

- 설비 및 장비의 정도가 유지되어 불량품을 생산하지 않게 되며 공정간 대기 중에 온도 차이로 인한 변형을 예방할 수 있다.
- 변질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품질이 향상된다.



(5) 생산품종 변경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금형, 치구, 공구 등이 정돈이 잘되어 있으면 찾는 손실을 줄인다.
- 짧은 기간 안에 변경된 생산계획에 대처할 수 있다.
- 청결한 작업장은 생산 의욕을 높여준다.

(6) 즐거운 직장, 발전하는 회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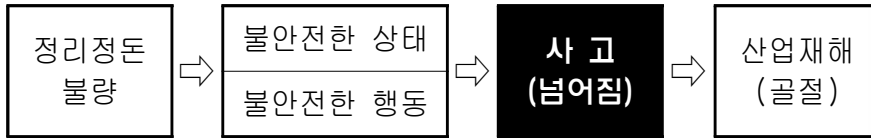
- 청결한 작업장은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며 납기가 지연 되거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아 신용이 향상된다.
- 낭비와 고장이 없어 안전하며, 원가가 낮아지고 이윤이 증대되어 회사가 발전한다.



2. 정리정돈과 안전·보건

가. 정리정돈과 사고의 연관성

작업장의 정리정돈 상태가 불량하게 되면 작업장 전체에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 불안정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산업재해나 화재 등이 발생하게 된다.



바닥에 재료나 완제품이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호스·코드 등이 발에 걸려 넘어지기 쉬우며 기름·물·결빙된 바닥·쓰레기·먼지·찌거기가 잔존하는 상태의 작업장은 재해의 운상이다.



나. 정리정돈과 작업환경

정리·정돈·청소 상태가 불량하면 재해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도 초래하기 쉽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에서는 기계 설비나 바닥에 고인 분진이 비산하여 분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또한 세척제나 신나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직장에서는 작업대나 바닥에 흐른 유기용제가 증발하여 중독되기 쉬우며, 인화성 용제의 경우는 화재·폭발 등도 일으킨다.

다. 정리정돈과 위험·유해물질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직장에서는 정리·정돈, 청소가 특히 중요하며 유해가스,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정리·정돈, 청소 상태가 좋지 않으면 착각이나 오조작, 용기의 전도, 파손 등에 의하여 내용물이 유출, 증발하여 화재, 폭발 등 중대한 사고와 재해를 초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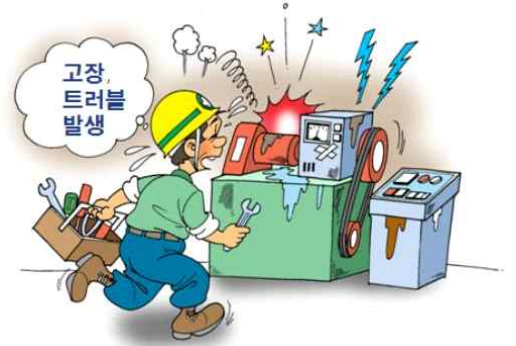
이것들을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청소 불량도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라. 기계설비의 고장과 트러블

정리·정돈·청소가 불량하면 찌꺼기, 쓰레기, 먼지 때문에 기계설비가 마모되어 정밀도가 저하되며 수명이 짧아지고, 고장·트러블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자동화가 된 기계설비는 정밀 전자부품으로 제어되므로 그 제어장치가 쓰레기나 먼지로 인하여 고장·트러블을 일으킨다.



마. 불명확한 표지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

정리·정돈, 청소가 불량하면 안전보건표지, 기계의 조작계통 표지 등을 식별하기 어렵게 되며 오조작, 오판단을 초래하여 중대한 사고와 재해의 원인이 된다.



3. 정리정돈과 생산성

정리정돈의 불량은 비능률적인 작업을 초래하여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산업재해와 직업병도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자의 휴업과 생산중단, 생산저하와 직결되어 화재와 폭발 등 산업재해를 일으켜 기업 자체의 존폐 사태까지 될 수 있다.



가. 작업능률

정리정돈 상태가 나쁘면 설비에 무리가 가해지거나 원재료의 낭비로 비능률적인 직장이 되며 동시에 재해의 온상이 된다.

- (1) 정리정돈이 불량하면 필요한 물건을 찾을 때 많은 시간이 걸리며(시간의 낭비), 그 사이에 재해가 발생하기 쉽다.
- (2) 필요한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부적당한 물건으로 대용하여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된다.
(무리한 동작 위험한 행위).
- (3) 불용품을 처분하지 않으면, 직장의 귀중한 공간을 좁혀 물건출납에 불편을 주어 원자재 운반에 장애를 일으킨다.



나. 품질

먼지나 쓰레기는 직장의 더러움을 초래하여 품질 불량과 결부되기 쉽고 정리·정돈 불량은 회사의 제품을 쉽게 더럽히며, 이물이 들어가거나, 선별한 불량품이 우량품에 섞여 출하되기도 한다.



4. 작업장에서의 정리정돈 실천방법

가. 작업장 정리정돈

(1) 통로의 확보

작업장의 정리정돈은 안전한 통로의 설정과 확보로부터 시작되며 통로는 80cm 이상의 폭을 유지하여 표시하고 통로는 평탄하게 하고 통로 위나 통로 옆에 장애물·기름·물 등의 더러움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통로가 없으면 물건을 놓아야할 장소가 잘보이지 않아 난잡하게 되고, 정리·정돈도 지켜지지 않으며 물건의 운반이 곤란하다.
- 통로가 없으면 작업과정 중 물건의 위에 올라앉거나, 사이에 들어가거나, 돌아가는 등 비능률적인 행동이 많아져 위험한 작업 및 불안정한 자세를 유발 하게 된다.



(2) 작업장 바닥의 정비

작업장 바닥의 필요없는 물건이나 요철, 공구류나 작업용구, 기름 등은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을 유발하므로 작업장 바닥의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한다.

- 작업장 바닥의 불용품을 처분하지 않으면 소중한 작업장소를 좁게 하며, 불용품이 불안전상태를 만든다.
- 작업장 바닥은 요철, 부분적 경사가 있다거나 불안전한 상태의 배관이나 연장코드, 공구류 등이 있으면 넘어지기 쉽다.
- 작업장 바닥에 기름이나 물이 쏟아져서 고이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쉽다.



(3) 원자재나 반제품 저장장소 지정

원자재와 반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놓은 장소와 쌓을 장소를 지정하여 출입하기가 쉽게 한다.

- 정리정돈이 불량하면, 필요한 물건을 꺼낼때 주위의 물건을 움직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게 되어 불필요한 작업이 많아지며 요통과 같은 재해가 일어난다.
-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쌓아 놓은 것은 허물어져 떨어지고, 쓰러지기 쉬우며 위험하다.
- 필요한 물건을 출납할 때 운반 가능한 통로나 공간이 없으면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된다.



(4) 쓰레기, 먼지, 찌꺼기의 추방

작업을 하다 보면 쓰레기, 먼지, 기름 찌꺼기 등이 쌓이거나 고이기 쉬워 생각지도 않은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를 깨끗이 하여 청결한 작업장을 만든다.

- 작업장 바닥의 쓰레기, 먼지, 찌꺼기, 잔재, 기름 등의 방치는 미끄러지고, 결국 재해 외에도 제품의 오염과 불량에 원인이 된다.
- 가연성 먼지의 퇴적은 화재사고의 원인이 된다.
- 분진이나 쓰레기, 먼지가 많으면 직업병 발생의 위험이 있다.
- 기계설비가 쓰레기, 먼지 등으로 오염되면 트러블이나 고장의 원인이 된다.



나. 기계설비의 정리정돈

(1) 날끝의 주변

공작기계는 보통 바이트의 날끝이 큰 힘으로 회전 또는 왕복하며 재료를 가공하므로 수공구, 계측기, 재료나 도구류 등을 날 끝에 가깝고 불안정하게 놓아두는 것은 위험하다.



(2) 구동부의 주변

기계의 구동부는 큰 힘으로 왕복 또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기체 밖으로 튀어나와 흔들리는 것도 있으므로 치공구나 계측기, 재료 등을 넣어두는 서랍장이나 작업대 등을 구동부에 접근시켜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3) 작업자의 주위와 바닥위

기계 설비에 가까운 작업자의 주위나 작업대는 정리·정돈·청소상태가 불량하기 쉬우며 원자재나 치공구, 연장코드 호스, 작업용구 등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때가 많다.

(4) 기계와 그 근처의 청소

기계는 더러워지기 쉽다. 철분, 절삭유의 비산, 절삭부에서 발생하는 흄, 기름 누출, 누수 등으로 기계 자체가 더러워지며 주위가 지저분하게 된다.

다. 전기설비의 정리정돈

(1) 전기설비 주변의 정비

수전설비 둘레를 싸고 있는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충전부 가까이에 물건을 놓으면, 몸에 닿게되어 감전이 되거나 물건이 닿으면 단락을 일으켜 화상이나 정전 사고가 일어난다.



(2) 전기설비 내부의 불필요한 물건제거

전기설비는 먼지, 쓰레기를 싫어한다. 이것은 접점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단락, 발열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자주 청소하고 또한 스위치박스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을 넣어 두지 않는다.

- 제어반, 분전반, 스위치 박스, 기타 스위치류는 먼지, 쓰레기가 쌓이거나 더러워지면 고장이 발생되며 또한, 사용 표시가 더러워져 잘 안보일 때는 오조작의 원인이 된다.
- 전기설비의 내부에 공구 등을 물건을 넣어두면 감전이나 단락사고 위험이 있다.

(3) 전기설비와 수분의 분리

물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없이 전기설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방수대책이나 감전방지 차단장치를 사용한다. 전기설비는 물의 침입을 막아야 하고, 물을 사용하는 설비는 멀리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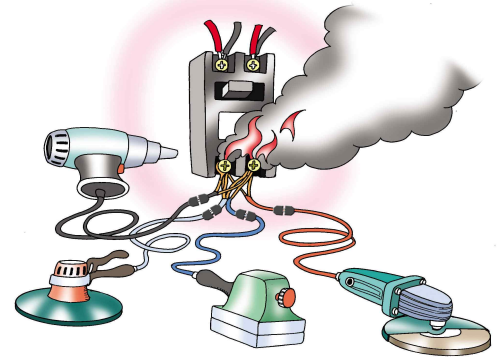
- 수분은 전기설비의 큰 적이다. 물기가 있으면 누전사고가 일어나며, 인체에도 수분을 띄고 있으면 피부의 전기 저항이 현저히 저하되고, 감전인 경우 많은 전류가 몸으로 흘러 사망하기도 한다.
- 땀이 흐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된다.



(4) 공구코드의 정리

콘센트에 접속하여 바닥위에 합쳐진 공구코드가 공간을 가로질러 가면 통행 중 걸려 넘어질 수 있으며, 복수의 전원코드가 접속되어 있는 콘센트에 기계명을 표시하지 않으면 잘못 취급하기 쉽고 또한, 문어발식의 접속은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않는다.

- 전기설비의 전원코드는 콘센트로부터 바닥 위로 합쳐서 연장하거나 높은 곳에서 늘어뜨려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정리불량 상태가 되기 쉽다.



라. 수공구 정리정돈

(1) 사용목적에 적합한 수공구

수공구는 많은 종류가 있으나 본래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사용에 알맞은 종류나 크기의 물건은 사용하기 쉬운 곳에 준비하여 둔다.

- 작업에 알맞은 종류나 크기의 공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대용품을 사용하게 되어 위험하다.
- 스패너를 햄머 대신 쓰거나 크기가 맞지 않은 공구를 무리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
- 스패너에 파이프를 끼워 손잡이를 길게 개조하여 사용하면 위험하다.



(2) 수공구 점검정비

수공구는 항상 점검정비를 하고 파손되거나 마모된 불량공구는 폐기하든가 지정된 자가 수리하여 사용한다.

- 햄머, 강철끌, 펀치등의 타격공구는 머리부분이 비틀어지거나 틈이 생기는 경우 즉각 적당한 반경으로 연마하는 등 손질을 하지 않으면 떨어지며, 비래물에 의한 위험성도 있다.
- 날이 있는 공구는 작업 도중 잘 잘려지지 않으면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위험이 증대한다.
- 드라이버의 끝이 닳아지면 볼트가 망가지게 되어, 능률이 떨어지고 위험성도 커진다.



(3) 수공구 사용시 정리정돈

수공구를 사용하는 곳은 특히, 발 밑을 정리하여 작업위치 선정을 잘 해야 한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수공구를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과 손으로부터 미끄러져 낙하하지 않게 하는 방법의 대책이 필요하다.

- 수공구 사용 장소가 정리정돈 되어있지 않으면 손이나 발이 불안전상태가 되어 무리한 사용이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다치기 쉽고, 높은 곳의 작업에서 사용중 공구가 떨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
- 기름이 많이 쓰는 작업장에서는 수공구에 기름이 묻어 미끄러지기 쉽고, 햄머 등의 자루에 기름이 묻으면 특히 위험하다.



(4) 보관

작업에 필요한 수공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구실이나 공구함을 준비하여 필요한 종류와 크기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 사용한 수공구는 방치하지 말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 날이 있거나 끝이 뾰족한 물건은 위험하므로 뚜껑을 씌워 두어야 한다.
- 회전 슝들은 고속 회전상태이므로 보관중 금이 가거나 손상이 생기면 사용중 파열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용의 정리대나 상자에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슝들은 수분,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하면 강도가 떨어지므로 보관에 주의한다.



마. 고소작업시 정리정돈

(1) 추락방지와 정리정돈

승강용구 없이 무리하게 오르내리는 사다리 등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안전로프 등을 착용 및 설치해야 한다.

- 추락재해는 사망률이 높아 설비나 안전대책이 중요하며 특히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재해가 많다.
- 고소 작업장 바닥에 정리정돈이 불량하면 미끄러지거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의 원인이 된다.
- 발판위의 작업바닥에 정리정돈 상태가 불량하면 발판 판자 등의 점검을 충분히 못하여 위험한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다.

(2) 낙하물과 정리정돈

사용중인 수공구, 도구류는 튼튼한 끈으로 고정물이나 몸에 묶어서 손으로부터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게 하고, 또 임시 보관시도 떨어지지 않게 대책을 강구한다.

필요한 물건은 안전하게 놓아두는 장소를 지정하여, 낙하하지 않도록 하며,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불필요한 남은 재료는 방치하지 말고 빨리 아래로 내린다.

-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건은 위험하며,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이 크므로 고소작업은 정리정돈의 철거가 특히 중요하다.

(3) 고소작업장의 정리정돈

출입금지구역 안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위험한 장소에서 선반, 로프 등을 마련하여 「출입금지」 표시를 한다.

자재나 남은 재료를 놓아둘 장소는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고소작업장 아래는 추락물이나 낙하물로 인해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구역은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며 또한 기재나 사용하다 남은 재료를 놓아두는 장소나 놓아두어서는 안될 위험한 장소와 놓아도 무관한 장소를 구분해야 한다.

(4) 작업종료 후의 뒤처리

작업이 끝났을 때는 불필요한 기자재, 남은 재료 등의 철거를 완전히 한 후 청소를 하고 사용한 기재나 수공구의 수량을 확인하고, 점검정비를 한다.

물건을 올리는 장소, 개구부, 피트 작업의 필요상 덮개 등을 개장한 것은 추락방지 조치를 확실히 복원한다.

- 작업이 끝난 후에도 남은 재료 등을 높은 곳에 그대로 두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이 발판의 해체작업 중에 낙하 또는 기계운전 중에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다.



바. 위험물 정리정돈

(1) 가스용기

위험·유해 가스가 고압으로 충전된 철강제는 중량물
이므로, 안전하게 배치하여 저장·배치해야 한다.

- 저장 장소에는 종류별로 구분하되 충전된 것과
안된 것으로 구분하여 쓰러지지 않게 한다.
- 유지류에 산소가 달으면 폭발적인 산화반응
(연소)을 일으키므로 산소는 가연성 가스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 보관 장소의 온도는 40℃를 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게 한다.
- 저장소 주위에서는 흡연이나 기타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유기용제

유기용제에는 인화성과 불연성이 있다. 어느 것이나 중독될 수
있으며 인화성물질은 불로 인하여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고, 불연성 물질은 독성이 강한 것이 많아(인화성의
것도 같은 종류가 있음) 산소결핍을 일으킬 수 있다.

- 유기용제의 보관은 용기에 내용을 명시하고
인화성인가 불연성인가를 표시해야 한다.
유기용제가 증발하면 화재, 중독, 산소결핍이 되기
때문에 용기는 반드시 뚜껑을 막아 보관한다.
- 보관, 사용장소에서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흐르면
곧바로 제거하도록 한다.
- 사용장소는 환기를 철저히 하고,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며 방독마스크도 착용한다.
-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화기를 엄금한다.



(3) 약품

산, 알카리, 기타의 약품에는 독성이 강한 것들이
많으며 특히 강한 산이나 강한 알카리는 인체에
심한 상처를 일으키므로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달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약품용기는 꼭 물질명을 표시하고 위험
특성에 맞는 전용 선반이나 상자에 보관하고
산은 합성수지 제품과 같이 부식하지 않는
상자나 접시에 보관한다.
- 보호장비(보호장갑, 고글형보안경 등)를
정비하여 두고 취급 시 꼭 착용한다.



사. 운반작업 안전

(1) 작업장에서 운반통로의 확보

인력에 의한 물건의 취급이나 운반중의 재해가 많으며, 전체재해의 약1/3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작업장의 정리정돈, 운반통로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것이 불량하면 재해가 자주 일어난다.

- 바닥위에 장애물이 많으면 발에 채이고, 미끄러지는 등 짐을 떨어뜨리거나 든 채로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한다.
- 운반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짐을 가지고 물건의 위를 타고 넘거나, 오르내리거나, 우회하거나 하여 재해가 발생하기 쉽다.
- 작업환경이 나쁘고 채광, 조명이 불량하면 어두운 곳에서 짐을 가지고 발아래의 안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2) 운반물을 안전하게 쌓는 법

운반물은 무너짐, 전도 등이 없도록 정돈하고, 안전하게 쌓는 것이 중요하다. 놓을 장소를 결정하고 짐의 종류, 크기 형상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하게 놓도록 하며 물건과 물건사이에는 반출하기 쉽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 무거운 것과 큰 것은 아래에, 가벼운 것과 작은 것은 위에 쌓아 불안정하지 않게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
- 긴 물건을 우물 정자형으로 쌓아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다.
- 작은 물건은 상자나 용기에 넣어 선반 등에 수납한다.



(3) 운반용구의 이용과 정비

운반작업을 능률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적절한 운반용구의 이용이 필요하며 짐을 운반하는데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운반용구를 준비하고 놓아둘 장소를 정해서 수납하여야 한다.

- 운반용구를 방치하면 방해가 되고, 찾을 때 번거롭고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게 되므로 운반용구를 항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를 잘하여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고 정돈해 둔다.



(4) 승강기구의 정비

좁은 작업장이나 창고 등에서는 많은 물건의 효율적인 수납을 위하여 선반이나 받침대를 만들어 입체적인 수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곳에 둔 물건을 꺼낼 때, 쓰기 쉽고 편리한 승강기구를 정비하여 두지 않으면 불안정한 작업을 하여 전락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기 쉽다.

- 밟고 오르는 물건, 사다리 등 승강기구는 작업에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준비하여 두고, 장소의 넓이에 비하여 승강기구의 수가 부족하면 사용하지 않는 수가 있다.
- 점검정비를 잘하고 파손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정리정돈의 진행방법

(1) 진행방법의 기본

정리정돈을 진행하려면 작업장 모든 사람이 그 중요성을 인식한 후, 전원이 연구하고 협력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관리감독자의 열의와 리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분위기 조성과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효과적인 진행방법

정리정돈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가) 라인직제의 조직을 활용하여 진행시키지만 직장별로 진행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전체의 지휘명령을 하는 최고 책임자를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 (나) 계획적 중심적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물품제거, 기름이나 물의 누출 방지, 바닥청소와 페인트 칠, 기계의 청소 등으로 나누어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사항에 대하여 「제1기 이것」 「제2기는 이것」 등 단계적으로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실제적이다.
- (다) 각 직장의 정리정돈 상태 평가와 비교도 중요하며 이것을 주관할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 (라) 각 현장의 공동으로 사용할 구역이나 기계설비와 기구 등에 대하여는 책임자, 책임구역 대상물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3) 관리감독자의 역할

직장의 정리정돈 청소는 관리감독자의 지도력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니며 관리책임자에게는 다음 사항이 요청된다.

- (가)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 주위부터 정리정돈을 양호하게 하며 책상위, 아래 주변으로부터 모범을 보인다.

관리부문의 사무실은 생산현장에 비해 정리정돈이 철저해지기 어렵지만 부하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쾌적한 직장 조성의 제1목표로 한다.



- (나) 정리정돈이 양호한 상태가 되도록 배려하는데 예를 들면 절삭가공기계를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치공구의 보관장소, 칩통, 남은 재료통의 설치가 고려된다.

- (다) 직장을 자주 순시하여 실상을 파악하고, 작업자의 의견을 들어 정리정돈이 이루어지기 쉬운 상황 조성에 노력한다.

- (라)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는 직장 부지런한 사람,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자는 칭찬하고 사업장 전체에 홍보한다.

- (마) 해결에 전문 기술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데 국소배기 장치의 설치, 설치된 장소의 효과 특정과 개선 등이 그 예이다.



(4) 작업자의 역할

작업장의 정리정돈은 작업자 자신에게 큰 문제이다. 귀중한 인생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지내면서 더럽거나 불결한 직장보다 쾌적한 직장에서 보내는 편이 좋은 것은 당연하며 더욱이 정리정돈은 작업자 스스로의 노력과 연구로 양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직장을 자기의 집과 같이 생각하는 기본적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 (가) 더럽히지 않게 대책을 강구한다. 예를 들어 누수, 기름이 흐르는 것, 분진 유기용제의 냄새 유출은 장치의 손질이나 약간의 관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많다.





- (나) 정리정돈과 연관시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반제품을 놓아둘때도 다음 공정을 생각해서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정리정돈이 양호하게 유지되는가 판단한다.

- (다) 매일 정리정돈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고 자기가 담당한 기계 설비에 대해 작업 종료 후 청소를 실시한다.

- (라) 동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직장의 정리정돈 청소유지 향상에 노력한다.



5.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p>(1) 작업장 바닥에 놓인 각재에 의한 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 상황 공장내에서 재해자가 이동하던중 바닥에 놓인 각재를 밟아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쌓아둔 철판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재해임 ▪ 예방대책 -작업장 정리정돈 및 이동통로 확보 -안전모의 올바른 착용(턱끈 조임) 	
<p>(2) 결빙지역을 이동하던중 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 상황 영하의 추운날씨에 재해자가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작업을 준비하던중 2층 건물에서 떨어진 물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작업장 바닥에서 전도, 사망한 재해임 ▪ 예방대책 -“미끄럼 주의”표지판 설치 -결빙지역은 모래·부직포로 미끄럼방지 조치 실시 -안전모 착용(턱끈 조임) 	
<p>(3) 작업장 바닥의 오일에 의한 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 상황 공장내에서 재해자가 작업장 바닥의 오일을 보지 못하고 이동하던중 미끄러지면서 전도되어 사망한 재해임 ▪ 예방대책 -작업장 바닥 오일 제거 및 바닥 청소 철저 -“미끄럼 주의”표지판 설치 -안전모의 올바른 착용(턱끈 조임) 	
<p>(4) 건물바닥 청소작업중 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 상황 청소원인 재해자가 건물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세제를 뿌리고 마포걸레로 바닥을 청소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 재해임 ▪ 예방대책 -청소작업용 미끄럼방지 장화 착용 -“미끄럼 주의”표지판 설치 -안전모 착용(턱끈 조임) 	

제2장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 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 평가 대상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1)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
- (2)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 (3)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 (4)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4.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가.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2015년 3월 12일 까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나.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위험성평가 미 실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2014.10.02 10:13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2(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업무내용),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제24조(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등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해 사업주 등의 업무 및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등이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및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법령마당

▶ **안전보건공단 2017년 위험성평가 해설지침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보건정보 > 법령정보

5. 위험성평가 방법

가.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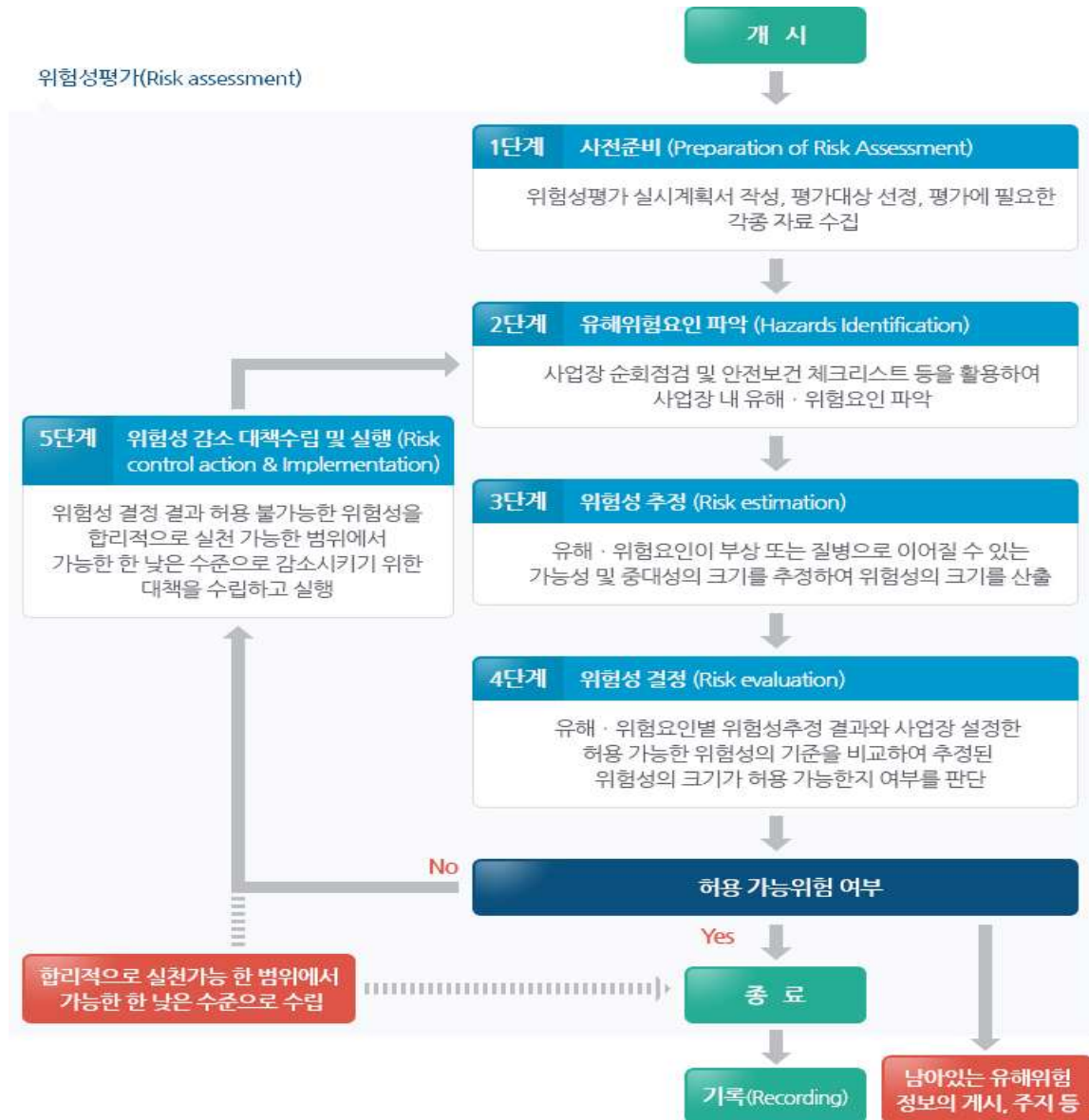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나.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 (1)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2) 사업주가 다음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법 제42조)
 -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6. 위험성평가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전준비

- (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가) 실시의 목적 및 방법
 - 나) 실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다) 실시 연간계획 및 시기
 - 라) 실시의 주지방법
 - 마) 실시상의 유의사항
- (2)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3)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 (가)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나)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다)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마)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바)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 (사)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나.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다. 위험성 추정

- (1)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 하여야 한다.
 - (가)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 (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 (다)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 (라)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2)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가)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 (나)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 (다)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 (라)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 (마)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라. 위험성 결정

- (1) 사업주는 제9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마.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1)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 (가)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나)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 (다)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라)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2)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 (4)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5)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7. 기록 및 보존

가. 사업주가 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2.]

제3장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1.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2조~제49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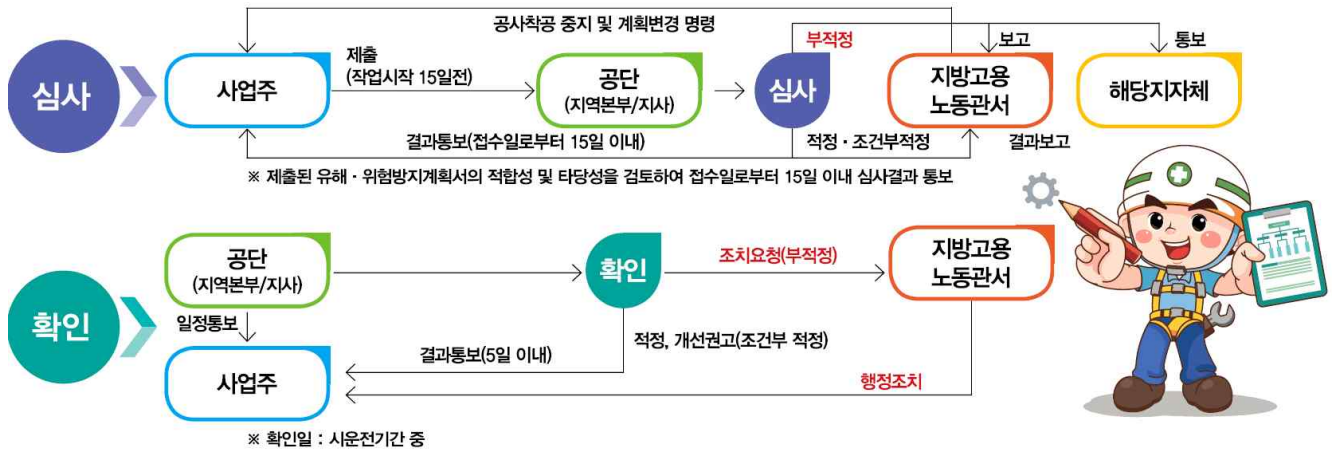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1000만원 과태료가 즉시 부과됨

심사·확인 절차



2. 제출 시기

사업주는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또는 대상 설비를 신설·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출력물, PDF파일) 공사착공 15일전까지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제출 대상

■ 한전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3개 제조업종에서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규모의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개조, 교체 또는 증설, 전면 조정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 ☞ 해당 공정, 대상 업종과 대상 설비가 중복될 경우에는 대상 업종으로 총괄하여 제출
- ☞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무실, 연구실(Pilot-Plant는 포함)이나 설비(공조 설비, 난방용 보일러 등), PSM 대상 공정(설비)은 작성 범위에서 제외

■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업종 및 공장등록증명서에 있는 업종 확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insu/srch.jsp?confirmyn=Y>)하여 가입납부서비스 ⇒ 보험료 등의 알아보기 ⇒ 우리회사보험관리번호 조회하기 ⇒ 사업장명 ⇒ 관할지역 선택한후 조회를 클릭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업종코드(5자리 숫자)가 표기된다.

-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111~25999)
-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110~23999)
-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111~29299)
-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110~30999)
- (5) 식료품 제조업(10110~10800)
-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111~22299)
-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101~16302)
- (8) 기타 제품 제조업(33110~33999)
- (9) 1차 금속 제조업(24111~24329)
- (10) 가구 제조업(32011~32099)
-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111~20502)
- (12) 반도체 제조업(26110, 26120)
- (13) 전자부품 제조업(26211~26999)



■ 대상(5종) 설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대상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6. 분진작업 관련 설비

(1)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용해하는 로로 용량 3톤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 시

(2)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의 특수화학설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설비를 설치·이전·변경 시

- 특수 화학설비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별표 9

위험물질	기준량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글리콜·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셀룰로오스 등	10킬로그램
나. 니트로 화합물 트리니트로벤젠·트리니트로톨루엔·피크린산 등	200킬로그램
다. 니트로소 화합물	200킬로그램
라. 아조 화합물	200킬로그램
마. 디아조 화합물	200킬로그램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사. 유기과산화물 과초산,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등	50킬로그램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5킬로그램
나. 칼륨·나트륨	10킬로그램
다. 황	100킬로그램
라. 황린	20킬로그램
마. 황화인·적린	50킬로그램
바. 셀룰로이드류	150킬로그램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10킬로그램
아. 마그네슘 분말	500킬로그램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1,000킬로그램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50킬로그램
카.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50킬로그램
타.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파.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300킬로그램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1) 차아염소산	300킬로그램
(2) 차아염소산칼륨, 그 밖의 차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1) 아염소산	300킬로그램
(2) 아염소산칼륨, 그 밖의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1) 염소산	300킬로그램
(2) 염소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염소산암모늄, 그 밖의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염소산칼륨, 과염소산나트륨, 과염소산암모늄, 그 밖의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브롬산염류	100킬로그램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1)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2)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바륨, 그 밖의 무기 과산화물	50킬로그램
아. 질산 및 그 염류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그 밖의 질산염류	1,000킬로그램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1,000킬로그램 3,000킬로그램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가솔린·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 이하인 물질	200리터
나. 노말헥산·아세톤·메틸에틸케톤·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물질	400리터
다. 크실렌·아세트산아밀·등유·경유·테레핀유·이소아밀알코올·아세트산·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23℃ 이상 60℃ 이하인 물질	1,000리터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50세제곱미터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0 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황산·질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아세트산·불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30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7. 급성 독성 물질 가. 시안화수소·플루오르아세트산 및 소디움염·디옥신 등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5밀리그램 이하인 독성물질 나.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다. 데카보란·디보란·포스핀·이산화질소·메틸이소시아네이트·디클로로아세틸렌·플루오르아세트아마이드·케텐·1,4-디클로로-2-부텐·메틸비닐케톤·벤조트라이클로라이드·산화카드뮴·규산메틸·디페닐메탄다이소시아네이트·디페닐설페이트 등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1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0.5mg/l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0.05mg/l 이하인 독성물질 라. 산화제2수은·시안화나트륨·시안화칼륨·폴리비닐알코올·2-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염화제2수은 등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5밀리그램(체중) 이상 5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마.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이상 2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바. 황화수소·황산·질산·테트라메틸납·디에틸렌트리아민·플루오린화 카보닐·헥사플루오로아세톤·트리플루오르화염소·푸르푸릴알코올·아닐린·불소·카보닐플루오라이드·발연황산·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디메틸에테르·페놀·벤질클로라이드·포스포러스펜톡사이드·벤질디메틸아민·피롤리딘 등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100ppm 이상 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0.5mg/l 이상 2.0mg/l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0.05mg/l 이상 0.5mg/l 이하인 독성물질 사. 이소프로필아민·염화카드뮴·산화제2코발트·사이클로헥실아민·2-아미노피리딘·아조디소부티로니트릴 등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 이상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아. 에틸렌디아민 등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200밀리그램(체중) 이상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자. 불화수소·산화에틸렌·트리에틸아민·에틸아크릴산·브롬화수소·무수아세트산·황화불소·메틸프로필케톤·사이클로헥실아민 등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500ppm 이상 2,500ppm 이하인 독성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2.0mg/l 이상 10mg/l 이하인 독성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0.5mg/l 이상 1.0mg/l 이하인 독성물질	5킬로그램 5킬로그램 5킬로그램 20킬로그램 20킬로그램 2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3) 건조설비

건조기 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을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r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 시

(4)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 시

(5) 허가대상 물질 및 관련 설비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법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벤젠[71-43-2]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7. 황린(黃磷)[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6) 분진작업 관련 설비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시(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 m³/분 이상)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시(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m³/분 이상)

■ **유해물질 49종** ①디아니시딘과 그 염 ②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③베릴륨 ④벤조트리클로리드 ⑤비스 및 그 무기 화합물 ⑥석면 ⑦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⑧염화비닐 ⑨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⑩크롬광 ⑪크롬산 아연 ⑫황화니켈 ⑬취발성 콜타르피치 ⑭2-브로모프로판 ⑮6가크롬 화합물 ⑯납 및 그 무기화합물 ⑰노말렉산 ⑱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⑲디메틸포름아미드 ⑳벤젠 ㉑이황화탄소 ㉒카드뮴 및 그 화합물 ㉓톨루엔-2,4-다이소시아네이트 ㉔트리클로로 에틸렌 ㉕포름알데히드 ㉖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㉗곡물분진 ㉘망간 ㉙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㉚우수프탈산 ㉛브롬화메릴 ㉜수은 ㉝스티렌 ㉞시클로헥산 ㉟아닐린 ㊱아세토니트릴 ㊲아연(산화아연) ㊳아크릴로니트릴 ㊴아크릴아미드 ㊵알루미늄 ㊶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㊷용접흄 ㊸유리규산 ㊹코발트 ㊺크롬 ㊻탈크(활석) ㊼톨루엔 ㊽황산알루미늄 ㊾황화수소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서류 및 현장)

- 서류심사 시 필요할 경우 사업장 관계자에게 참석을 요청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심사 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교부
- 서류 부적합 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청
(사업주는 필요 시 추가로 10일 이내 범위에서 제출기간 연장을 공문으로 요청 가능 함)
- 공단은 7일전에 현장 확인 일정을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시운전 단계에서 현장을 확인
(심사결과 조건부적정 판정과 관련된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완료여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계획서 변경내용이 적정 여부(해당시), 계획서에 언급되지 않은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
- 현장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10일 이내에 개선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사업주는 1회에 한하여 개선 기간 연장 가능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시행 2020.1.16.(대통령령 제30256호) [시행일: 2021.1.1.] 제4호나목 [시행일: 2021.1.16.] 제4호러목(법 제35조 제5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트목, 프목, 흐목, 기목, 니목, 디목, 리목, 미목, 비목, 시목, 이목, 지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중대재해
-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개별기준(시행 2020.1.16. 대통령령 제30256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가. 법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 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1호		1,000	1,000	1,000
나.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2호		1,000	1,000	1,000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300	400	500

마.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300 500 300 500 300	500 400 500 400 500 400	500 500 500 500 500 500
바.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500	500	500
사.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300	400	500
아.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7조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0 50	500 250	500 500
자.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10	250 20	500 30
차.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카.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0 50	20 250	50 500
파.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하.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2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거.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너.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100	500 200	500 500
더.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3호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러.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청 사항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2호		50	250	500
머.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않거나 설치·부착된 안전보건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되는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개소당	10	30	50
버.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법 제175조		5	10	15

지키지 않은 경우	제6항제3호				
서.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300	600	1,000
어. 법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000 300 1,000 1,000 300	1,000 600 1,000 1,000 6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저.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4호		30	150	300
처.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30	150	300
커. 법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한 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300	600	1,000
터.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퍼.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	250	500
허.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	10 5	20 10	30 15
고.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30	150	300
노.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4호		1,000	1,000	1,000
도.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 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3항제1호	1)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500 150	1,500 300	1,500 500
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4호	1)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500 1,000	750 1,000	1,000 1,000
모.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보.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5	300 10	500 15
소.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4호		50	250	500
오.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 제2항제2호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0	3,000	3,000
조.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오복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5조 제3항제2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700	1,000	1,500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초.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0	500	500
코.	법 제6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토.	법 제6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포.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호.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0	500	500
구.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누.	법 제7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두.	법 제7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루.	법 제7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우.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이하를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이하를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이하를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0만원)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부.	법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	500	1,000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수.	법 제7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우.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6호	200	250	300
주.	법 제75조제6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추.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500	700	1,000
쿠.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0	20	50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당)	50	100	150
투.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500	700	1,000
푸.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가맹사업자에게	법 제175조 제2항제1호	1,500	2,000	3,000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후. 법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5호		500	700	1,000
그. 법 제84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7호		300	300	300
나.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증대상별)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	500	1,000
다.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자율안전확인대상별)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르. 법 제9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200	600	1,000
미.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증서류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50	250	500
브.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300	600 600	1,000 1,000
스. 법 제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300	600	1,000
으.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즈.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8호		30	150	300
차. 법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에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3호		30	150	300
크.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8호		300	300	300
트.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5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100 50	200 200 100	500 500 500
프. 법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내 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 제출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6호		500	500	500
후. 법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제7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100 100	200 200	500 500
			10	20	50

		않은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제공한 사업장 1개소당)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100	200	500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10	20	50
기. 법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6항 제9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한 자가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2)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30
니. 법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자료대체자료로 적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 제8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승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한 경우	500	5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한 자가 승인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료가 아닌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디. 법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 제9호		500	500	500
리. 법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0호		100	200	500
미.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1호		500	500	500
비.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 제12호		100	200	500
시. 법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5항 제3호	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0	20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10	20	50
이. 법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10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300
지. 법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	법 제175조 제6항 제11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으로 양도·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양도·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 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다)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경고표시를 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받지 못해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한 경우(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양도·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라)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10	20	50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용 용기 및 포장에 담긴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도·제공하는 자가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0	100	300
지.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2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	300
키. 법 제1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 제1항제1호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한다)	1,000	1,500	
		2) 그 밖의 경우	3,000	5,000	
티. 법 제1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피. 법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3호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히. 법 제1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한 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3호		5	10	15
가.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나.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으로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4호		100	200	300
다. 법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 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라.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6호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0	50	100
마.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3호		100	300	500
바. 법 제1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4호		500	500	500
샤. 법 제1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작업환	법 제175조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건강증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6항제15호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아.	법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5호		100	300	500
자.	법 제1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00	300	500
차.	법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7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4호		500	500	500
타.	법 제1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00	300	500
파.	법 제1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300	300	300
하.	법 제1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 300	150 300	300 300
거.	법 제133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5	10	15
녀.	법 제1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50 300	150 300	300 300
더.	법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1) 통보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50 300	150 300	300 300
려.	법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0	500	500
며.	법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3호	1) 사업주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2) 근로자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500 5	1,500 10	1,500 15
버.	법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4호		1,500	1,500	1,500
서.	법 제14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지도사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50	300	500
요.	법 제149조를 위반하여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1)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30	200 150	300 300
쥬.	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6호		300	300	300
쵸.	법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8호		1,000	1,000	1,000
교.	법 제15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6호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 500	300 500	500 500
토.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검사·지도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7호		300	300	300
표.	법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각 서류당)	법 제175조제6항제18호		30	150	300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시행일자: 2020.1.16

산업안전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안전본부(043-212-8678)

NO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주요 내용	벌칙
1	제16조[관리감독자]	▷ 기계기구 또는 설비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착용·사용 교육, 산업재해보고·응급조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확인, 위험성평가 등 업무수행	1차 300만원 과태료
2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관리담당자]	▷ 상시 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또는 대행기관에 위탁 ▷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업무수행	1차 500만원 과태료 1차 300만원 과태료
3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 정기교육 : 비사무직(매분기 6시간), 사무직(매분기 3시간),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정기교육 50% 이상 실시 ▷ 채용 시 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4시간), 건설 외(일용근로자 1시간, 외 8시간 이상) ▷ 특별교육 : 건설일용직(2시간 이상), 건설업 이외(16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1시간), 일용근로자 외(2시간)	1차 10만원 과태료 1차 50만원 과태료 1차 10만원 과태료 1차 50만원 과태료 1차 10만원 과태료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2년마다 6시간), 안전·보건관리자(2년마다 34(신규)24(보수)시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최초 양성교육 16시간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 실시)	1차 500만원 과태료 1차 100만원 과태료
4	제3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 본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1차 50만원 과태료
5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함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차 300만원 과태료
6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위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7,8,9 기준) · 금지표지(출입금지, 사용금지 등)/경고표지(인화성, 산화성, 독성, 물질 등)	1차 10만원 과태료 (1개소 당)
7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열·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을 취급 그 밖의 불량한 작업방법 · 추락·붕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천재지변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8	제39조(보건조치)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9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재발생시 은폐해서는 안되며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사망 시 : 지체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 · 부상 시 : 3일 이상 휴무 시 관할 노동지청에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보상조사표 보고	사망 미보고 : 3천만원 산재 미보고 : 700만원
10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지시제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1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 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협의체(1회/월), 건설업 및 제조업 순회점검(1회/2일) 합동점검(1회/2개월)위생시설 설치 협조, 안전 및 보건 정보제공 등	500만원이하 벌금
12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프레스, 전단기, 가스집합용접장치, 크레인, 승강기, 리프트, 용접기, 압력용기, 보일러, 롤러기, 연삭기, 목재가공용 등근돌, 동력식 수동대패, 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 없이 사용 및 양도, 대여 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3	제84조[안전인증] 제85조[안전인증 표시]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및 프레스 및 전단기,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방폭구조제품 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성능의 안전성을 위하여 안전인증기준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 ▷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차 100만원 과태료
14	제93조[안전검사]	▷ 크레인(2톤 이상),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국소배기장치(49종 50% 초과) 원상기, 화학설비와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등 설치 후 3년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 실시	1차 200만원 과태료 (1대 당)
15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등의 경표시]	▷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운반, 저장시 작성·제공받은 MSDS 게시 또는 비치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해당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교육 ▷ 제공·사용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1차 100만원 과태료 1차 50만원 과태료 1차 50만원 과태료
16	제118조[유해, 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a-나프틸아민, 디아니신, 디클로로벤젠 및 그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휘발물 등(산안법 시행령 제8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7	제119조[석면조사] 제122조[석면해체, 제거]	▷ 건축물 등 철거시 지정된 기관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함. ▷ 일정 면적이상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시 석면해체 제거 업자를 통하여 해체해야 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8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화학유해물질 114종, 금속류 24종, 산 알칼리류 17종, 가스상대물질류 15종, 영 제88조 허가대상유해물질12종, 물리적인자2종(소음 80dB 이상), 분진7종, 작업환경측정 실시(신규가동·변경 시 30일 이내, 이후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1차 20만원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대상 근로자 1명 당)
19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1회/2년, 비사무직 1회/1년 ▷ 특수건강진단 : 소음, 화학물질, 분진 등 노출 근로자(1회/반기-2년)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채용, 작업전환시 작업전 실시	1차 10만원 과태료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 당)
20	제164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 안전 및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에 관한 서류 (3~30년 보관)	1차 30만원 과태료 (각 서류 당)

이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미게시 시 과태료)